



2025 SEOUL World Conven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Let Them Be Free!

October 22-24, 2025

The Plaza Hotel Seoul · Seoul Plaza

| Co-hosts |



NGO Council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NCNKHR)



Human Rights Foundation(USA)

| Organizer |

2025 Seoul World Conven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Organizing Committee

Keynote Speakers



Suzanne Scholte

- President, Defense Forum Foundation (USA)
- Chair, Free North Korea Radio
- Chair, North Korea
- Freedom Coalition



Nicholas Eberstadt

- Henry Wendt Chair in Political Economy,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EI)
- Senior Adviser,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NBR)
- Member, World Economic Forum (WEF)



Nicolai Sprekels

- Founder & Director, German NGO SARAM
- Expert Adviser, ISFINK (International Solidarity for Freedom of Information on North Korea, Korea)



Sang Hyun Song

- 2nd Presid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
- Chair Professor, New York Univ.



Hyeon Soo Lim

- Founder & Director, TMTC (Total Mission Training Center)
- Senior Pastor (2nd), Great Light Church, Canada
- Imprisoned in North Korea for 31 months (949 days) before release



Timothy Cho

- NK Defector
- Secretary-General, UK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
- Aide to UK Member of Parliament Fiona Bruce
- Ran for UK Local Council Elections three times



Yuna Jung

- North Korean Defector Broadcaster & Human Rights Activist
- CEO, YouTube Channel: Yuna Jung TV
- Interpreter and assistant to Jim Rogers

NK Insider Forum

22
Oct
Morning
Session

09:30 - 09:50	Registration
10:00 - 10:30	Opening Ceremony
10:30 - 11:05	Mainstage Talks Kang Kim (Former Deputy Representative, North Korean Embassy in Russia) Yumi Kim (North Korean Defector, CEO of Lumina)
11:10 - 12:00	Tech Session: AI for Individual Rights Calvin Kim (FreedomTech Developer) - "Using VibeCode for Human Rights"
12:00 - 13:00	Lunch & Networking



	Panel Discussion	13:00 - 14:00
	"Strategies for Ensuring the Continued Well-being of North Koreans"	
	Special Performance by K-Pop Singer Sunye	14:00 - 14:30
	Mainstage Talks	14:30 - 14:40
	Michael Breen (Consultant, Author, Columnist)	
	Keynote Lecture	14:40 - 15:10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Sang-Hyun Song (2nd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losing Remarks	15:10 - 15:20
	Contest Awards Ceremony	15:20 - 15:30
	Networking	15:30 -

22
Oct
Afternoon
Session



2025 서울 북한인권세계대회

2025 Seoul World Conven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10.22(Wed)-24(Fri)
The Plaza Hotel Seoul · Seoul Square

공동주최



사단법인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NGO Council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Human
Rights
Foundation

주관

2025 서울 북한인권세계대회 조직위원회



NK Insider Forum

주제강연

Keynote Address

국제형사재판소와 북한인권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송상현

Sang-Hyun Song

송상현 교수는 제2대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으로 재임하며 국제형사사법과 인권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법조인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이자 뉴욕대 석좌교수, 하버드대, 플로리다대 등에서 초청교수로 활동했습니다. ICC 재임 중에는 북한인권 문제 관련 유엔 조사보고서와 회부 논의에 기여했으며, 퇴임 후에도 국제포럼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국내외에서 법조·인권 분야 공로를 인정받아 다수 훈장을 수상했습니다.

Professor Sang-Hyun Song served as the second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making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and human rights. He is Professor Emeritu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Chaired Professor at New York University, and has served as Visiting Professor at Harvard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Florida, and other institutions. During his tenure at the ICC, he contributed to UN investigations and discussions concerning NKHR, and after retirement, he has continued to advocate for improvements in NKHR at international forums. He has received numerous awards recognizing his achievements in law and human rights both in Korea and internationally.



국제형사재판소와 북한인권

송상현 / 서울법대 명예교수, 제2대 국제형사재판소장

1. 서론

우리는 통일에 앞서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인도하려고 무진 애를 써왔습니다. 당면 문제 중의 하나로서 북한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전대미문의 인권탄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그동안 유엔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국제사회와 일반적, 포괄적 공조의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23년 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의 창설로 인하여 이제는 유엔과 병행하여 또는 이와는 별도로 ICC를 통해서 새로운 대북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18년간 반복 통과시킴으로써 세계의 여론에 호소해 왔던 방식은 사실상 별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 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김정은의 이름을 명시하여 통과된다면 지금껏 다른 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북한 고위 간부들의 충격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우상화된 최고지도자가 자기들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서 만장일치로 비난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면 크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유엔이 취한 북한 인권에 관한 획기적 조치는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를 설치하고 Michael Kirby 호주 대법관의 헌신과 노력으로 아주 생생한 북한 인권 위반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고한 것입니다. 이 유명한 보고서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론 부분에서 북한의 인권 위반은 ICC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문제라고 지적한 이래 ICC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므로 ICC를 깊이 연구하고 다각도로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인권과 정의에 대한 국제질서의 재편성

제2차 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규범이 다양하게 채택되었기 때문에 세계질서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첫째, 유엔은 국제적 대화와 안전을 위한 우선적 포럼이 되었고, 둘째,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현대적 인권 개념의 토대가 되었으며, 셋째, 제2차 대전 직후에 뉴른 베르크와 동경에 설치된 전범재판소는 나치 독일이나 일본 군국주의가 자행한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응징함으로써 국제형사법(International Criminal Law)의 발달을 촉진했으며, 넷째, 집단학살조약(Genocide Convention)과 4가지 제네바 협약이 1949년까지 채택되어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 일부 성문화되었고 세 가지 추가의정서가 맺어져서 범위가 확장되고 규정이 보완되었습니다. 이처럼 국제법 중에서도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이나 국제형사법은 새로운 국제적 요청에 따라 발전 속도가 빨라서 국제법의 특별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권 문제에 관련되는 각종 국제규범의 새로운 변화를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한 예로서 유엔은 2015년 지속가능한 지구의 발전을 위한 약속을 했습니다. 즉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면서도 미래세대가 자원을 사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구체화시켜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17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목표에 담긴 가치 중에서 정의, 평화, 인권, 법치, 자유, 민주, 포용 그리고 효과적인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16번째 목표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서 인권 문제를 폭넓고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앞으로 인권 연구의 가장 중요한 출

발점이요 귀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는 평화이고, 평소에 항상 준수되어야 하는 보편적 가치로서는 인권을 들 수 있으며, 그다음에는 포용적 사회에서 공동체적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같은 가치와 정신은 ICC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The Rome Statut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은 물론 인권에 관한 각 국제규범에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날 때부터 부여받은 보편적 가치로서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그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부녀자의 인권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로마규정의 조문들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인권 가치 대립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경쟁시대에 살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편적 가치에 더 잡은 인권분야에 대한 실천과 강조는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공산 독재국가들에 대한 효과적 공략 수단이 될 것이므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될 분야입니다.

국제규범의 발전에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 즉 인권(human rights)과 평화(peace)의 유지가 국제사회의 공통된 관심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첫째, 유엔헌장은 침략적 전쟁을 금지하고, 유엔안보리에 국제적 평화와 안녕의 유지에 관한 책임을 부과하였으며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를 설치하여 국가 간의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가 자국민과 자국 영토 내에 있는 다른 개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개념의 표현으로서 국제인권법원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법원은 유럽의 각국 정부가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구제 요청을 심의함으로써 선진적 판례를 축적한 결과 인권법 발전에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구체적 기능과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대륙에 인권법원이 설치되어 기능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시아 대륙에만 없습니다. 제가 2004년 ICC 재판관으로서 방콕에서 인권법원 설치를 주장해온 이래 워낙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다기해서인지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최근 유엔의 인권 문제를 수년간 직간접적으로 다루어 오신 정진성, 서창록, 백태웅, 백범석, 신혜수, 이양희, 이주영, 신희석 등 몇 분이 최근에도 가능한 나라끼리 먼저 아시아인권법원을 창설하도록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셋째, 국제형사법의 씨앗은 국제 평화를 저해하는 악행에 책임 있는 개인을 국제법정에 세워서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심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임시국제형사법정(ad hoc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등의 운영을 통하여 국제형사법, 국제인권법 그리고 국제 인도법이 서로 접촉하고 공통 경계를 가지면서(coterminous)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ICC는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의 해석과 적용을 선도하는 국제사법기관이 되었습니다.

3. SDG 16과 정의에 대한 새로운 개념

위에 언급했지만 SDG 16에서 강조하는 정의는 일반적으로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람 중심의 정의(People-centered justice)를 뜻할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거나 소통하지 못하면서 법만 외치는 사회는 법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의를 ICC가 실현하고자 하는 형사정의로 특정하면 종래보다 확장된 개념이 됩니다. 만일 ICC가 중대 국제범죄를 수사하여 범죄자를 처벌하고 절차를 종결한다면 여기까지는 국내 형사법원과 다를 바가 없고 기능적으로는 소위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를 실현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국제형사사법 시스템이 이처럼 처벌 기능을 수행하여 당사자들은 물론 국제사회에 억지 효과(deterrence effect)와 응보적 정의를 통한 평화 확보의 필요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ICC가 비록 구호 기관은 아니지만 수사와 처벌을 통한 응보적 정의의 구현 외에 피해자와 그 가족을 재판 확정시까지 선제적으로 보호 지원해 줌으로써 소위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와

치유적 정의(reparative justice)를 동시에 실현해 주는 인류역사상 초유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로마규정 제75조).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피해자신탁기금(Trust Fund for Victims)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로마규정 제79조). 6년간 제2대 재판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저는 피해자 구제프로그램에 주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은 형사소송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으므로(로마규정 제68조)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이에 걸맞게 보호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제형사소송의 방대한 규모, 복잡성 그리고 특수성에 비추어 소송 확정시까지 장구한 세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피해자 보호가 ICC의 새로운 길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수한 피해자들을 위한 인권 보호와 선제적 정의가 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정의비용(Justice Cost)의 분담

따라서 ICC는 새로운 대표적 국제정의기구로서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경제원조기구와 함께 인류 평화와 인권을 성취하는 공동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전과는 달리 국제정의기구인 ICC가 탄생했으니 원조 제공 전에 피해국에 기본적 법질서를 세우게 한 후에 원조자금을 투입해야만 부패 방지를 위한 효과적 처벌 등 국제경제원조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경제기구는 지원 자금 제공 전부터 형사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ICC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며, 정의 비용을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할 국제적 공식이나 원칙을 도출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2011년 세계은행의 연차총회에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5. SDG 16과 평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

다음으로 SDG 16에서 강조하는 평화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국제형사정의가 없이는 지속가능한 평화란 없다(no sustainable peace without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는 것이 금세기의 국제적 흐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계평화를 가장 심각하게 교란하는 전쟁(War), 침략(Aggression), 집단학살(Genocide) 그리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등 4개의 범죄를 저지른 독재자는 먼저 회원국의 국내 사법시스템이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지만, 만일 그리할 수 없거나 이를 원치 않을 때에는 비로소 2차적으로 ICC에서 수사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이처럼 보충성 원칙(Principle of complementarity)에 의하여 운영되는 ICC는 국제형사정의와 평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는 법원(The court of last resort)입니다. 그러므로 4대 범죄의 적정한 수사과 처벌을 위해서는 ICC보다 먼저 수사과 재판을 하는 회원국의 국내 사법제도 및 교정 제도와 법조 인력 및 시설 등 그 전반적 운영이 모든 면에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합니다.

6.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과 장래 방향

6.1. 국제형사재판소 탄생의 전사(前史)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자는 논의가 왕성했습니다. 1948년에 집단학살조약(Genocide Convention)이 성립되자 이 범죄를 수사해서 처벌할 국제형사재판소를 동시에 설립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1950년에는 유엔총회의 위촉으로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가 기초한 “국제형사재판소”안이 성립되어 국제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동서냉전이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제안은 1989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의 로빈슨(Arthur Robinson) 대통령의 노력으로 다시 유엔총회의 재논의에 부쳐질 때까지 국제적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동안 유엔은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국제기구였으나 평화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4대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국제 법정에 세워서 처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ICC의 탄생 전에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임시국제형사법정을 설립하여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필요한 형사 정의를 실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이베리아, 시에라 레온, 동티모르, 레바논, 구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캄보디아 등의 사태를 다루기 위하여 설립된 임시형사재판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임시국제형사법정은 이해당사국들의 타협과 기금 출연이 원만치 않고 예측가능성, 정치적 자주성과 효율성의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자연히 조약에 기반을 둔 영구 상설의 국제형사재판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ICC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이 1998년 성립되어 영구상설의 ICC가 창립되었습니다.

6.2 국제형사재판소의 창립과 한국의 관여

ICC는 2002년 7월 1일 헤이그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년간 로마규정의 성립 과정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고, ICC 설립 이후로는 2002년 11월 13일 로마규정을 어렵게 비준하고 부랴부랴 초대 재판관을 지명하여 당선시키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했으나 증인 보호나 판결집행에 관한 협정 등은 ICC와 체결한 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로마규정을 비준하여 ICC가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을 가질 때까지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지원한 바도 없는데 강제로 차출되어 2003년 초 힘든 선거운동 끝에 당사국총회에서 첫날 최고 득표로 당선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소장으로 선임된 이후에는 주로 수십년 된 아프리카의 내전을 종식시키고자 엄청난 오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죽을 고비를 다섯 번이나 넘으면서 아프리카 현지를 여러 번 방문하여 피해자들을 위문·상담·치유하고 지역민의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6.3. 각국의 사법 체계를 연결하는 국제형사사법시스템의 등장

ICC 탄생의 의미는 ICC를 구심점으로 125 회원국의 국내 사법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단일한 사법기구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가 외곽에서 UN과 같은 국제기구, EU, OAS, La Francophonie, The Commonwealth와 같은 지역기구 그리고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Watch와 같은 NGO의 긴밀한 협조 하에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글로벌 사법 시스템(global justice system)이 탄생된 것입니다.

로마규정의 전문(前文)을 보면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준 중대범죄로 인하여 수백만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희생된 과거에 비추어 4대 중대범죄는 세계의 평화, 안전 그리고 안녕을 가장 중대하게 위협하므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며 무고한 인민을 살해하고도 처벌을 회피하던 부당면책(Impunity)을 종식시키자는 강한 뜻이 담겨있습니다.

7. ICC와 북한문제

7.1. ICC에 보내는 무질서한 투서

제가 소장으로 있었던 6년 동안에도 우리나라의 납북자단체, 탈북자단체 기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 NGO나 개인이 빈번하게 ICC를 방문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온갖 투서, 고발장, 고소장 등이 무수히 접수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규정 제13조a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부 아닌 자가 회부한 사태(situation)는 부적법하므로 이 같은 소추 요청을 자주 받은 ICC 검찰부는 컴퓨터에 자동응답기를 설정하여 부적법 각하



한다는 자동응답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피차간 김정은을 고발하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며 소모적이지 빈틈없이 연구를 한 다음 정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좀 더 준비된 조치를 취하면 좋겠습니다.

7.2. 북한문제에 대한 ICC 검사의 직권 시도

ICC의 초대 검사는 2010년 3월 우리 병사 46명이 사망한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은 해 11월 민간인 5명이 사상한 연평도 포격 사건을 묶어서 직권으로 김정은을 단죄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즉 2010년 12월 당 사국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뉴욕에서 검사는 북한의 행위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특정 행위에 대하여 예비조사(preliminary examination)를 하겠다고 별안간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표했습니다. ICC 검사의 그러한 행태를 내밀하게 추적해 보니 자기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세계 언론의 주목을 끌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남북한을 제대로 구별하지도 못하는 20대의 젊은 직원을 연락책으로 임명하고, 아무런 사전 연구나 준비 없이 남북한 정부에게 수사상 관련 자료와 증거만 제출하라는 통지를 반복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검사의 지시에 순응하다가 나중에는 예민한 군사정보까지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조차 못 받고 무시당하는 실정에 봉착한 초대 검사는 중국을 움직여 북한에 들어감으로써 또 한 번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자기의 시도가 불가능함을 알게 되자 아무 준비 없이 사건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이 돌연 사망했고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했습니다. 제2대 검사는 이를 뒤처리하는 임무를 맡아 친북 성향이 농후한 어느 정치학 교수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불기소장 및 총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총회 제출 전에 살짝 초안을 입수해 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반도의 역사와 분단 경위에 관하여 북한이 선전하는 대로 베꼈을 뿐 아니라 예컨대 NLL이 국경이라는 동 얼토당토않고 법적으로 부정확한 표현이 가득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사전에 입수한 저는 검사와 명확한 담판을 짓고 현지 주재 한국대사의 결정적 노력과 역할로 최대한 올바르게 수정을 하게 한 다음 총회에 보고했습니다. 오랜 세월 후 ICC를 연구하는 후학들이 이런 무책임하고 부정확한 문서를 권위 있는 국제기구의 전거(authority)로 인용하면서 남한에 불리한 주장을 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등골이 서늘하여 보고하기 전에 사력을 다하여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7.3. 북한의 우크라이나 군사원조와 한국 문제를 다룰 새 전기

결실 없는 이러한 소동의 결과 ICC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다소 김이 샌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국제기구 중에서 아무래도 한국의 영향력이 막강한 곳은 ICC 뿐입니다. 마침 그러한 기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범인 러시아에게 무기와 탄약을 제공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발견된 무기의 파편에는 북한 고유의 연호가 쓰여 있거나 한글 알파벳이 쓰여 있는 사진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선 유엔안보리에서는 북한의 전쟁물자 제공이 유엔의 대북제재결의 위반이지만 우리는 그런 위반을 논의한 결과 효과적인 응징책이 UN에서 마련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전쟁물자 공급을 이유로 김정은을 ICC에 회부하는 적기가 지금이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의 러시아에 대한 무모한 군사원조는 회원국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ICC에 고발하는 적격(standing)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김정은이 푸틴에게 전쟁 물자를 보낸 것을 이유로 고발하여 ICC에서 책임을 가려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범이 침략자 러시아라고 한다면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행위를 한 북한 정권은 적어도 종범(로마규정 제25조 제3항 c) 내지는 기여범(제25조 제3항 d)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이제는 전투병까지 대량으로 파병했으므로 러시아와 북한은 전쟁범죄의 공동정범(co-perpetrator)으로 법률적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김정은이 전투병까지 파견한 행위는 종범(accomplice)이 아니라 수집되는 증거에 따라서는 로마규정 제25조에 해당하는 푸틴과 공동정범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김정은을 ICC에 고발하여 형사 소추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북한의 파병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전쟁피해국이 된 우크라이나가 직접 제소함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푸틴에게 이미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둘째, 우리 정부가 지정학적으로 북한 정부를 바로 ICC에 제소하는 등 직접적 적대 행위를 하기는 어려우므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직접 김정은을 ICC에 고발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로마규정 제13조에 따라 ICC 검사가 직권으로(ex officio) 소추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독립적으로 증거수집 및 조사(Independent investigative power)를 충분히 하여 만반의 준비를 한 다음 소추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이 같은 검사의 독립적 조사개시는 케냐와 필리핀을 포함하여 8차례 사용된 바 있습니다. ICC 검사를 꾸준히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하고, 만일 현 검사가 거부한 채 그의 임기가 끝나면 다음에는 아시아 대륙의 검사 배출 순서이므로 한국이 차기 검사 후보를 내세워 당선시키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제 정의가 실현되려면 장구한 시간이 걸리므로 인내와 끈질긴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엔 안보리를 움직여서 북한이나 러시아가 저지른 행위를 ICC에 회부하는 결의를 할 수 있다면 더욱 명분이 서지요. 근 20년 전 비회원국인 리비아와 수단의 경우에는 이들 국가의 ICC 회부결의안이 통과된 선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리비아의 가다피는 이내 죽었고, 2009년에 영장이 발부된 수단의 알바시르 대통령은 2019년 쿠데타로 실각한 채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 같은 회부결의가 김정은의 체포영장 발부까지 이끌어 낸다면 커다란 성공이 되겠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나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적 여론에 호소하여 이 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차선책으로는 유엔에서 대다수의 국가가 북한의 파병 행위의 불법성을 널리 알리는데 동참하면 그만큼 상징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7.4. 북한의 일반적 인권 위반 사태와 ICC

북한의 파병을 이유로 한 유엔안보리의 회부결의가 실패하게 되면 또 하나의 소추 이유로서는 북한에서 널리 자행되는 일반적 인권 위반 행위들이 있습니다. UNCOI에 의하면 이러한 일반적 인권위반행위는 우선 로마규정 제7조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구성합니다. 수집되는 증거에 따라서는 집단학살은 물론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에 해당하므로 ICC 검사로 하여금 증거를 부지런히 수집하여 직접 고발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을 ICC에 고발하자는 논의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나 유엔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지독한 일반적 인권위반 행태, 특히 식량권의 박탈(deprivation of food rights)과 강요된 노동(forced labor) 등에 관심을 집중해 왔습니다. 김정은이 인권 위반을 이유로 여태껏 ICC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그의 행위가 푸틴의 범죄보다 덜 심각해서가 아니라 푸틴의 체포영장은 오직 우크라이나전쟁과 관련한 범죄행위만 다루는데 비하여 김정은이 평상시에 저지른 인권위반행위는 너무 광범위한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로마규정상 영향을 받는 나라가 제소하던지 유엔안보리의 회부결의가 필요한데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COI보고서는 북한에 널리 자행되고 있는 일반적 인권위반 행태에 관하여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위반,



각종 차별, 거주이전의 자유 위반, 음식에 대한 권리 및 생명권에 대한 위반, 자의적인 구금, 고문, 사형집행, 수용소 감금, 유괴 및 강제 실종(forced disappearances) 등 다양한 행위 유형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는 국외 여행이나 국내 도시 간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므로 북한에 입국한 유엔기관들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현실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생식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여성이 건강 돌봄을 받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또한 북한은 정치적 수용소와 많은 불법적 구금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한 의료 환경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COI보고서는 이 같은 북한의 일반적 인권위반 사태를 ICC로 회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유엔 보고서는 영양불량, 산부인과적 돌봄이나 여성 건강을 위한 도구나 장치 등의 결여, 임신 중 구타와 강제노동, 신생아의 살해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여성의 권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북한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7.5. 푸틴과 네타냐후와金正은의 경우

2023.3.18. ICC의 검사가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Warrant of Arrest)을 청구하여 예심부가 이를 발부했습니다(로마규정 제58조). 재판소의 수사팀이 우크라이나 전투 현장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로 수집한 많은 증거를 토대로 역사상 세 번째로 이 같은 청구(request)를 한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는 회원국이 아니어서 ICC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쟁 상대국인 우크라이나는 회원국이므로 수사팀의 입국과 수사가 가능했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가 푸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혐의는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고아원과 아동보호시설에서 납치되어 러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사실이 포함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ICC는 모든 국가에게 혐의자를 체포해서 헤이그로 인도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러시아 정부나 다른 회원국이 푸틴 대통령을 체포해서 헤이그로 인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영장은 시효(statute of limitation)가 없으므로 푸틴이 사망할 때까지 그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로마규정 제29조). 뿐만 아니라 125개 회원국은 푸틴이 자기 나라 영토에 들어오면 그를 체포해서 헤이그로 인도해야 할 조약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푸틴이나 네타냐후는 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여행제한이나 외교활동 제약 등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CNN은 ICC의 체포영장 발부로 푸틴의 세계가 훨씬 작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푸틴은 2023년 회원국인 남아공에서 주최된 브릭스(brics) 회의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의 경우도 푸틴과 동일합니다.

만일 김정은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푸틴의 경우와 동일하게 국제사회에서 영장 발부가 갖는 상징적 의미도 적지 않을뿐더러 이 영장은 시효가 없으므로 죽을 때까지 불법공동침략자라는 낙인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는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형벌이며 온 세계에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법을 위반한 행위자라는 상징성이 큼니다.

8. 북한인권문제의 국제적 중요성

UNCOI 보고서(2014)가 발표되자 한국에서도 국제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현인회의(The Sages Group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가 발족되어 구체적으로 8가지 권고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나 UNCOI 보고서와 수차의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체적 행동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18년 이후로는 유엔안보리의 의제 중 북한인권문제는 중요 의제에서 떨어져 나가서 miscellaneous가 되거나 “any other business”로 격하되고 말았습니다. 인권에 관한 이슈는 전반적으로

핵 의제보다 후순위(backburner)로 남겨진 감이 있어서 유감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물론 NGO와 국제기구 등이 전쟁 지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를 꾸준히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찾고 증언을 남겨 잊히지 않도록 해서 보존된 기록은 언젠가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 큰 의미와 쓰임새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2차 대전 당시 잔혹한 일을 많이 저질렀던 나치가 훗날 전쟁범죄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일 단죄가 완벽하지 않았을지언정 세계는 그들의 죄를 그냥 넘기지 않고 법정에 세워서 죄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결국 러시아도 북한도 비슷한 궤적을 밟지 않을까요.

9. 결어

ICC의 창설은 국제인권법의 역사상 가장 괄목할만한 성취입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인권 위반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갖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인권 존중은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법의 지배 원칙과 동시에 강화되어야만 달성될 수 있는 목표입니다. 그리하여 중요한 국제범죄의 책임추궁(accountability)은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되어 국제형사정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ICC 앞에는 제한된 관할권, 회원국의 자발적 협조 여부, 보충성, 조직의 능률성, 국제정의비용, 정치외교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분위기에서의 사법부의 독립 등 많은 도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각 회원국과 유엔 및 각 국제기구는 ICC에 협조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가 북한 문제를 글로벌 도전으로 보고 글로벌 해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ICC의 활용은 부당면책과 인권위반에 대한 싸움을 넓혀 가는데 가장 의미 있는 길 이 될 것입니다.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Sang-Hyun Song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Second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 Introduction

South Korea has long pursued reform and openness in North Korea and sought international cooperation, primarily through the UN, to address North Korea's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offers a new, potentially independent channel for accountability. Despite numerous UN resolutions, progress has been limited. Stronger impact could have been achieved by directly naming Kim Jong-un. The UN's 2014 Commission of Inquiry (COI) report remains a landmark, asserting that North Korea's crimes fall under ICC jurisdiction.

2. Re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Order on Human Rights and Justice

Post-WWII developments, including the UN Charte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transformed global norm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16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justice, peace, and strong institutions. The Rome Statute, among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anchors the principles of human dignity, accountability, and universal human rights. In particular, protection of women and children under the ICC framework reflects evolving human rights priorities, especially in countering authoritarian regimes.

3. SDG 16 and a New Concept of Justice

Justice under SDG 16 is people-centered, going beyond punishment to include victim support. The ICC's dual role in retributive and reparative justice is a pioneering model, offering victims participation and support through mechanisms like the Trust Fund for Victims. This is a transformative contribution to global justic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4. Sharing the Cost of Justice

To ensure justice supports development, international aid should be linked to the recipient country's legal infrastructure. The ICC must cooperate with development institutions like the World Bank and UNDP. Song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norms ensuring the cost of international justice is shared globally.

5. SDG 16 and a New Concept of Peace

There can be no lasting peace without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The ICC acts when states are unable or unwilling to prosecute crimes such as war, genocide, aggression, and crimes against humanity. National judicial capacity is crucial for the ICC's complementary role.

6. The Role and Future Direction of the ICC

6.1 Historical Background

The ICC emerged after decades of ad hoc tribunals with limitations. Adopted in 1998, the Rome Statute created the first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6.2 Korea's Role

Korea played a major role in the Rome Statute's drafting and ratified it in 2002. Song was elected the second President of the ICC and emphasized victim support, outreach, and judicial independence during his tenure.

6.3 A Global Justice System

The ICC now anchors a global network of legal and institutional cooperation involving states, NGOs, and international bodies. The Rome Statute reflects humanity's resolve to prevent and punish crimes that shock the conscience of humanity.

7. The ICC and the North Korea Issue

7.1 Ineffective Petitions

Despite many petitions from NGOs, under the Rome Statute, referrals must come from states or the UN Security Council. The ICC Prosecutor cannot act on NGO complaints alone.

7.2 Failed Investigations

Past ICC efforts to investigate North Korean attacks (Cheonan sinking, Yeonpyeong shelling) were flawed and ultimately dropped due to poor preparation and lack of cooperation.

7.3 New Opportunity: North Korea's Support for Russia in Ukraine

North Korea's military aid to Russia provides a new legal basis for ICC action. Ukraine, as an ICC member, could refer Kim Jong-un under Article 25 for aiding an aggressor. If Ukraine acts, it could prompt ICC prosecution. Alternatively, the Prosecutor could act on their own initiative (*proprio motu*).

7.4 Crimes Against Humanity

If referrals for aggression fail, North Korea's internal human rights abuses—documented by the COI—could be prosecuted under Article 7 of the Rome Statute. Violations include torture,

executions, discrimination, abductions, and more.

7.5 Lessons from Putin and Netanyahu Cases

Putin's ICC arrest warrant demonstrates the symbolic and practical power of ICC action. A similar warrant for Kim Jong-un would profoundly isolate him diplomatically and symbolically label him a war criminal for life.

8. International Importance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Despite multiple UN resolutions,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s are being deprioritized in favor of nuclear concerns. By contrast, Ukraine's war crimes documentation sets an example of how to preserve evidence for future justice. Just as Nazi crimes were eventually prosecuted, so too may the crimes of authoritarian regimes like North Korea.

9. Conclusion

The ICC is a historic advancement in global justice, embodying the rule of law and accountability for grave crimes. It faces ongoing challenges—limited jurisdiction, political pressure, and voluntary cooperation—but maintains global support. The ICC should be leveraged to address North Korea's crimes and expand international efforts against impunity.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crisis is a global issue that demands a coordinated international legal response.